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81호

2021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1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역량 제고

□ **지원규모(1차) : 30억원, 100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강소100 패키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9대 핵심품목 內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강소100 패키지'는「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중 비상장기업만 참여 가능(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9개월 이내	30백만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 **공고기간 : 2021. 2. 2.(화) ~ 2021. 3. 23.(화)**

* 전산접수기간 : **(해결의뢰서)** 2021. 2. 2.(화) ~ 2021. 2. 23.(화) 18:00까지
(해결계획서) 2021. 2. 24.(수) ~ 2021. 3. 23(화) 18:00까지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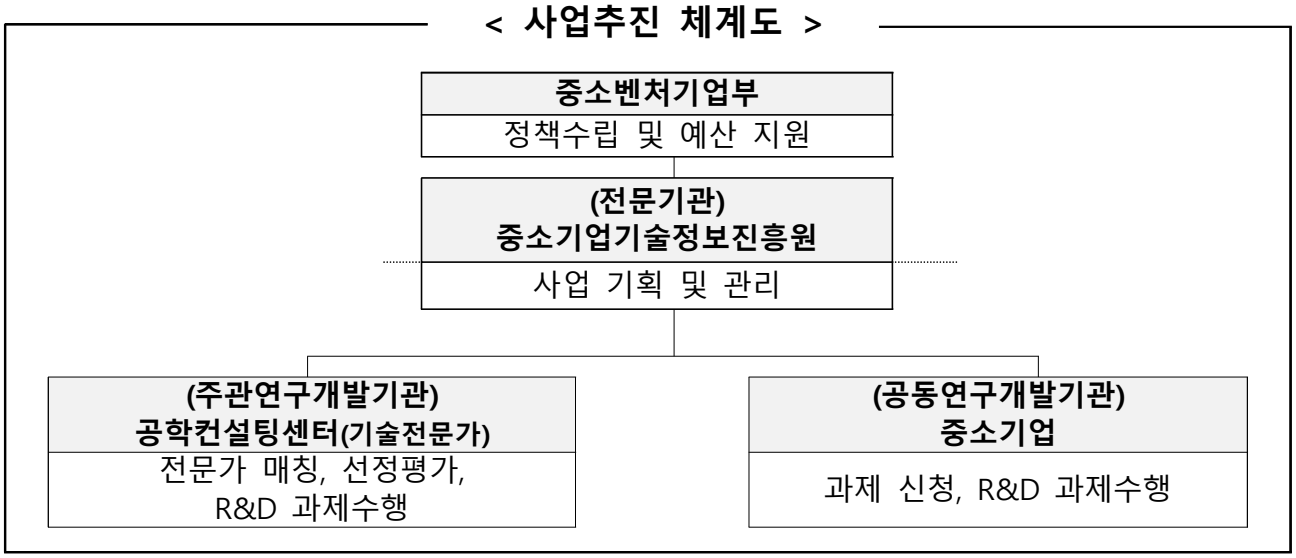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50억원, 167개 과제 지원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차	100	'20.2월
	2차	67	'20.4월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단, '강소100 패키지'는 자유공모(품목지정)

□ 지원분야

○ **자유공모(맞춤형기술파트너)**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품목지정(강소100 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9대* 핵심품목 內에서 중소기업의 R&D기획 및 맞춤형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전기전자, 환경

** 품목별 상세설명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지원방법 : 전문가 매칭 → 해결계획서 →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 공학컨설팅센터에서 해결의뢰서를 검토하여 기술전문가를 매칭하고, 기술전문가와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제출

○ 기술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강소100 패키지'는「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중 비상장기업만 참여 가능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선정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중소기업)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이내에서 최대 9개월 3천만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30,000	335	3,015	3,350	33,35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90	1	9	10	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백만원 지원한 경우임

□ **기술료 징수기준**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 납부 기술료 면제**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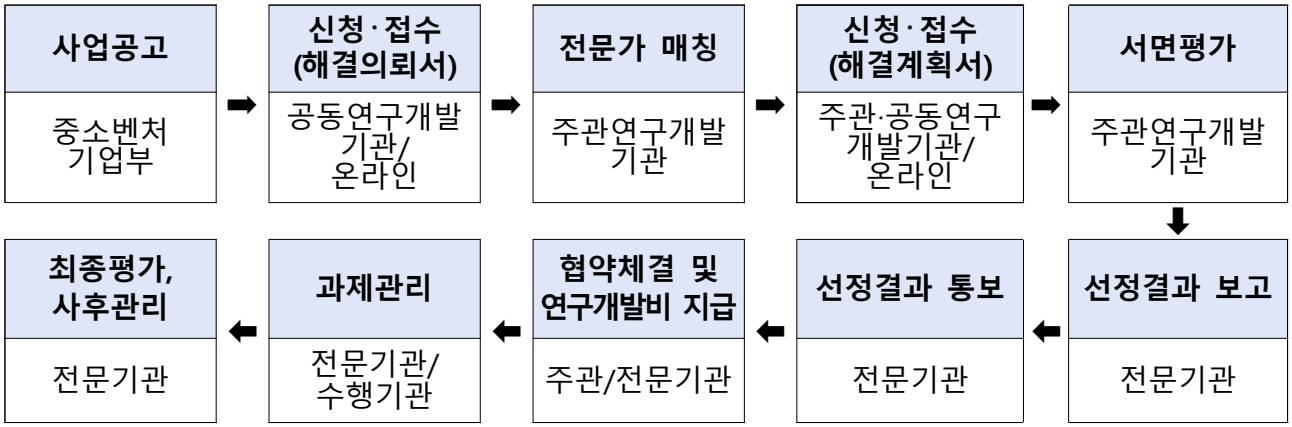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학컨설팅센터,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공학컨설팅센터별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과제를 선정

$$\text{종합평점} = \frac{\text{서면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평가기준

○ 서면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20
	기술애로 해결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30
	기술전문가 구성 및 역량(	10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5
사업성	사업화 및 기대효과	15
	일자리 평가(고용친화도)	20
합계		100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1>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아기-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2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⑬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⑮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⑯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⑰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⑲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⑳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2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또는 10인 이상 증가한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가점에 대한 인정은 서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i)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ii)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iii)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2. 2(화) ~ 3. 23(화)**

○ **접수기간**

구분	신청기간
해결의뢰서 제출	**2021. 2. 2.(화) ~ 2021. 2. 23.(화) 18:00까지**
기술전문가 매칭 및 해결계획서 제출	**2021. 2. 24.(수) ~ 2021. 3. 23(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맞춤형기술파트너 신청(기술애로 해결의뢰서**)** → 전문가 매칭(공학컨설팅센터) → 일반과제 신청(연구개발계획서)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1년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해결의뢰서**	**연구개발계획서 (해결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해결계획서)**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해결의뢰서 직접입력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1장 분량의 '기술애로 해결의뢰서'를 직접 입력

③ 3단계 : '전문가 매칭' 후 신청기업 및 공학센터의 온라인 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및 온라인 서약 진행

④ 4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⑤ 5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4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신청 시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O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③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O	
④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⑥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O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⑧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7.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②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적용 예외)

③ 참여기업의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7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 동사업 지원횟수 3회 이상 기업이 신청 시 지원제외

④ 가점 및 감점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3책 5공 적용 예외)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⑦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⑧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유의사항 등	042-388-0741 042-388-0743
공학컨설팅센터	각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사업계획 작성, 전문가 매칭, 선정평가 등	공학컨설팅센터 문의처 참조

□ 공학컨설팅센터 문의처

순번	권역	공학컨설팅센터명	전화
1	서울·경인·강원	인천대학교	032-835-9754
2		한성대학교	02-760-5584
3		가천대학교	031-724-4523
4	대구·경북	금오공과대학교	054-478-6677
5		대구대학교	053-850-4762
6	부산·울산·경남	창원대학교	055-213-2918
7	호남·제주	전북대학교	063-270-3656
8		전남대학교	062-530-1972
9	대전·충청	한밭대학교	042-821-1898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